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소관부서 : 마케팅추진부

제 1 조 (적용범위)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 예금약관' 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6 조 (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자동 만기연장일) 당시 영업점과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만기일 및 재예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제 7 조 (이자지급방법) 이 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 8 조 (재예치) 이 예금의 재예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2023. 7. 18 개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 이 예금은 가입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선택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자동재예치 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나. 재예치 후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IRP(기업형, 개인형)

가.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

나.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 조 (특별중도해지) ①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10. 13 개정)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가. (2014. 10. 13 삭제)

나. (2014. 10. 13 삭제)

다. (2014. 10. 13 삭제)

3.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5.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6. 수탁자의 사임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2014. 10. 13 개정)

8. 퇴직연금 계약 관련 수수료의 징수 (2014. 10. 13 개정)

가. (2014. 10. 13 삭제)

나. (2014. 10. 13 삭제)

② 상기 ①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2014. 10. 13 신설)

1. 계약기간이 3월, 6월, 1년인 계약 :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내인 계약

가.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1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나. 예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2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다. 예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3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제 10 조 (중도인출)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를 예외 적용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로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제 11 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 및 통장발급이 불가하며 세금우대 저축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제정	2011.02.10	2011.02.10	
개정(1)	2011.12.01	2011.12.01	
개정(2)	2014.10.13	2014.10.13	
개정(3)	2023.07.18	2023.07.18	이 특약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